##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3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김예지・임종득・김대식

주호영 • 백종헌 • 장동혁

김선교 • 신성범 • 김장겸

엄태영 · 김도읍 · 최수진

김소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 호의2·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가 종료되거나 퇴소조치된 청년(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6항 중 "취약계층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 (이하 "취약계층 청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년에"를 "청년등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청년의"를 "청년등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청년의"를 "청년등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5의2. "자립준비 청년"이란</u>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
	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
	소조치된 청년(제1호 본문에
	도 불구하고 18세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⑤ (생 략)	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6
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취약계층 청년 및 자립준비 청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	년(이하"취약계층 청년등"이라
여야 한다.	<u>한다)</u>
	<b></b>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u>청</u>	③ <u>청</u>
<u>년에</u>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	년등에

되어야 한다.

- ④ ⑤ (생 략)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의 질 향상) ① (생 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u>청년의</u>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생 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u>청년의</u>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의 질 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년등의</u>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년등의</u>